제782회 신설·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금융위원회)	1.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제출(신설)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제출2.일시정지의 기간 구체화(신설)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에 대한 일시정지 조치의 기간 구체화	1.비중요 2.비중요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보건복지부)	1.주류광고 금지의 기준(강화) ○ 광고 금지 시간대 적용 매체 확대 *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 방송 →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 멀티미디어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 아동. 청소년 대상 행사 개최 시 주류 제품 광고 금지 신설 ○ 광고 노래 금지 매체 확대 * 방송 매체 → 모든 매체 ○ 옥외광고물 중 주류광고 금지 매체 확대 * 도시철도 역사, 차량, 스크린도어 → 대중교통시설 및 수단 ○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옥상 간판을 통해 송출되는 영상광고물에 대한 금지 시간대(07-22시) 적용	1.비중요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해양수산부)	1.해양보호생물 추가 지정(강화) (별표3) 해양보호생물 3종 추가 지정	1.비중요
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1.특정감시 성능요구 공역 사전승인 의무 부과(신설)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국토교통부)	특정감시 성능요구 공역 사전승인 의무 부과 2.항만 등의 시설물 안전을 위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제한(신설) 항만 등의 시설물 안전을 위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제한 3.항공종사자 등의 기내 흡연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신설) 항공종사자 등의 기내 흡연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4.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정비규정 포함내용 신설(신설)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정비규정 포함내용 신설 5.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출제인력 기준 준수의무 부과(신설)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출제인력 기준 준수의무 부과	2.비중요 3.비중요 4.비중요 5.비중요
5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환경부)	1.양성과정의 등급별 교육 과정의 기준(신설) 1급 및 2급에 대한 총 교육시간(집체교육, 실무교육),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수료기준 등에 대한 규정 2.양성과정의 평가 방법에 대한 규정(신설) 1급 및 2급에 대한 교육이후 교육을 성실히 수강하고	1.비중요 2.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역량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시행함에 따라 평가 방법 및 합격기준 등에 대한 규정 마련함	
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	1.운반검사 범위의 확대(강화) 3. 운반검사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핵물질에 대한 방호에 관한 검사 가. 핵물질을 해당 사업소에서 다른 사업소까지 운반하는 경우 나. 핵물질을 수출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소에서 국내 항구 또는 공항까지 운반하는 경우 다. 핵물질을 수입하여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서 해당 사업소까지 운반하는 경우 2.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신청(신설) 제18조의2(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신청 ① 법 제13조제2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대한 물리적방호를 위한 계획(이하 “국제운송방호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간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 핵물질을 수출하는 경우 :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서 수입국의 영역에 진입하는 지점까지의 국제운송방호계획 2. 핵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 대한민국의 영역에 진입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하는 지점부터 국내 항구 또는 공항까지의 국제운송방호계획 3. 핵물질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를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 경유·환적을 위하여 입항시키려는 경우 : 대한민국 영역 내의 국제운송방호계획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 :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발하기 90일 전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 : 수출국의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발하기 30일 전 ③ 법 제13조제2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계획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국제운송방호검사(신설) 제18조의3(국제운송방호검사)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의 기간 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2제1항 제1호 :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발하기 14일 전 2. 제18조의2제1항 제2호 및 제3호 : 대한민국의 영역에 진입하기 14일 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7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정안 (교육부)	1.교육시설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전성평가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신설) ○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하 범위로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공사 - 적용 굴착깊이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 굴착공사 영향 범위 내에 있는 건설공사 -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 건설공사 영향범위 내에 있는 건설공사 - 터널공사, 발파공사, 건축물 해체공사	1.비중요
8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정안 (교육부)	1.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신설)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 기준에 따라 인증항목을 교육시설 사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 대상별(유치원, 초·중·고·특수, 대학 및 기타교육시설)로 기준 제시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여성가족부)	1.출국금지 요청 대상 기준(신설) 출국금지 요청 대상 기준 마련	1.비중요
10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금융위원회)	1.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세부기준 신설(신설)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설립을 위한 최저 자본금과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 상한액 등의 세부기준을 설정 2.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기준 마련(신설) 보험업법 개정('20.12.8일)에 따라 의무화된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산출·적립의 적정성 외부검증과 관련하여 세부기준을 마련	1.비중요 2.비중요
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	1.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대상 금액 및 지역(신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6조의2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주택관할 신고관청에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함	1.비중요
12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행정안전부)	1.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신설)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제1항) 인증기관 지정 취소기준 확인을 위한 조치사항(제5항) 인증기관 지정취소 세부기준(제6항, 별표 10)	1.비중요
13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고용노동부)	1.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신설)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	1.
14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1.사료의 함량·혼합 제한(강화) 양식수산물의 에톡시퀸 잔류 허용량 준수를 위해 수산동물용 배합사료의 에톡시퀸 혼합을 금지함(20ppm의	2. 1 . 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비의도적 혼입 오차 허용)	
15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개정안 (국토교통부)	1.자동차 안전기준의 세부 시험기준 및 시험법 등 시험절차(강화)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방법 및 절차 (별표1 제1호, 제3호, 제41호, 제47호, 제48호, 제49호 및 제71호) - 충돌시 승객보호를 위한 충돌시험에 대한 시험방법 및 세부절차 마련(제1호) - 충돌시 연료누출 방지를 위한 세부시험절차 마련(제3호) - 이륜자동차의 전자파 적합성 확인을 위한 시험방법 마련(제41호) - 고전원전기장치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충돌시 안전성을 위한 시험모드 등 시험방법 마련(제47호) - 구동축전지 안전성을 위한 시험항목을 국제기준과 조화(제48호) - 플라스틱 창유리의 종류 및 세부시험방법 마련(제49호) - 가변축 작동 적정성 확인을 위한 시험방법 마련(제71호)	3. 1 . 비중요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질병관리청)	1.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신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를 임시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까지 확대(안 별표3)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가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국한되어 있어, 임시예방접종 대상 감	4. 1 . 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염병까지 이상반응 신고의무대상에 포함	
1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고용노동부)	1.사업주의 신고의무(노무제공자의 매월 보수액,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출산 등)(신설) 사업주의 신고의무(노무제공자의 매월 보수액,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출산 등) 부과 2.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신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5. 1 . 비중요 6. 2 . 비중요
1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고용노동부)	1.일용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등의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신설) 일용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등의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2.예술인 출산전후 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신설) 예술인 출산전후 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7. 1 . 비중요 8. 2 . 비중요
19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식용곤충의 중금속 기준 개정(강화) ⑤ 식용곤충(건조물로서) 납(mg/kg) : 0.1 이하 (다만, 장수풍뎅이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은 0.3 이하) 카드뮴(mg/kg) : 0.1 이하 무기비소(mg/kg) : 0.1 이하	9. 1 . 비중요 10. 2 . 비중요 11. 3 . 비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2.동물용의약품 기준적용 방법 개정(축수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도입)(강화)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및 어류에 국내 허가되지 않아 별도의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일률기준0.01 mg/kg으로 관리하는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을 도입 3.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삭제(강화) '뉴트리아'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 뉴트리아를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목록에서 삭제 4.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강화) (31) 마이클로뷰타닐(Myclobutanil) (현행과 같음) 부추 0.5 (32) ~ (60) (현행과 같음) (61) 비펜트린(Bifenthrin) (현행과 같음) 호프 10†	중요 12. 4. 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62) ~ (115) (현행과 같음) (116) 카탑(Cartap) (현행과 같음) 들깻잎 0.7 (117) ~ (126) (현행과 같음) (127) 클로르메콰(Chlormequat) (현행과 같음) 호밀 6.0† (128) ~ (162) (현행과 같음) (163) 펜디메탈린(Pendimethalin) (현행과 같음) 수수 0.05† 아스파라거스 0.1† (164) ~ (274) (현행과 같음) (275) 뷰타클로르(Butachlor) (현행과 같음) 마늘 0.05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276) ~ (372) (현행과 같음) (373) 스피로메시펜(Spiromesifen) (현행과 같음) 체리 0.7 (374) ~ (436) (현행과 같음) (437) 플룩사피록사드(Fluxapyroxad) (현행과 같음) 고구마줄기 0.05 (438) ~ (449) (현행과 같음) (450) 발리페날레이트(Valifenalate) (현행과 같음) 양배추 0.1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캐스케이드 보일러를 검사대상기기에 추가(강화) 캐스케이드 보일러를 '검사대상기기'에 추가 - 검사대상기기에 추가됨으로써 캐스케이드 보일러는 '안전검사' 및 '관리자 선임' 의무 발생 * 검사대상기기란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기	13. 1.비중요